<u>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u>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 2022년 2월 21일 동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밖의 가사노동자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실질적 주체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 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